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도 이 법에 따른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93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정내용 요약	4
IV. 조문별 검토의견	4
1.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도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4
2. ‘농촌위해시설’ 명칭 및 정의 변경	30
3. 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 미제출시 협의완료 의제	35
4. ‘경관농업지구’ 명칭 변경 및 지정요건 확대	41
5. 주민협정 주체 변경, 작성내용·기재사항 명확화 및 주민협정 체결요건 등의 위임근거 마련	45
6.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 마련	53
7. 중앙정책심의회 구성 등 위임규정 마련	59
8.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개선(안 제35조제1항)	62
9. 부 칙	6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면 보유 시·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읍·면을 지닌 139개 시·군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다.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가능한 관계기관을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라.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확대함(안 제12조제6호).

마. 주민협정서 작성 시에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만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주소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2항).

바. 시행령 위임 사항에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요건규정을 가능토록 함(안 제22조제5항).

사.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조문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아.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5조
제1항).

Ⅲ. 개정내용 요약

- ① 농촌공간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안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 등 개정)
 - 읍·면 보유 160개 시·군(현행)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개정안)도 필요시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 * 광주 광산구, 부산 남구, 울산 북구 등 약 17개(잠정)
- ② ‘농촌위해시설’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개정)
 -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
- ③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 가능한 관계기관 확대(안 제11조제2항 개정)
 - 협의 대상기관을 산업부·환경부에서 전체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
- ④ ‘경관농업지구’ 명칭 변경 및 지정요건 확대(안 제12조제6호 개정)
 - ‘경관농업지구’ 명칭을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변경
 - 동종·유사 경관작물(현행) 외 농촌마을, 자연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관(개정안)도 지구로 관리하여 보전·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확대
- ⑤ 주민협정서 기재사항 명확화 및 주민협정 체결요건 등의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개정)
 - 주민협정서 작성시 주민협의회 구성원 성명·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어 현장 혼선이 우려되므로 주민협의회가 있을 때만 기재하도록 변경
 - 주민협정 체결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마련
- ⑥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⑦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위임규정 마련(안 제32조제3항 신설)
- ⑧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개선(안 제35조제1항 개정)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방식을 변경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IV. 조문 별 검토의견

1.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도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제6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제10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제12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도 희망하는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이 법에 따른 다양한 권한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현행	개정안
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자치구를 말한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8. -----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생략)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생략)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하	④ ----- 시·군·구-----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u>시장 또는 군수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u>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u>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u>시·군</u>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생략) ④ ----- -----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② ----- ----- ----- ----- ----- <u>시·군·구별</u>-----

현행	개정안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제안)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② ----- <u>시장·군수·구청장</u>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현행	개정안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 ② (생략)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3조(주민협의회) ① · ② (생략)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 ② (생략) ③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④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⑤ (생략) 제23조(주민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현행	개정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사업시행자) ①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 ②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시행자) ①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생략) ②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② (생략)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u>시·군</u>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 ----- ----- ----- ----- ----- ----- <u>시·군·구</u>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조직)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 9. (생략) ④ (생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생략) 1. ~ 9. (생략) ② (생략) ③ <u>시장·군수</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8.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u>시장·군수</u>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u>시장·군수</u>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1. ~ 8. (현행과 같음) ④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⑤ ----- -- <u>시장·군수·구청장이</u> ----- ----- -----

현행	개정안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현행	개정안
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시장·군수</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시장·군수</u>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생	----- ----- ----- ----- -----. ②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u>-----. ②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현

다. 검토의견

1) 자치구 추가에 관한 사항

□ 현행법은 제2조제1호¹⁾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 지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은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을 말하고, 읍·면이 아닌 지역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참고1 : 이 법에 따른 농촌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촌**”이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고시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2)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참고2 : 농촌지역】

구 분		내 용			
1. 읍·면		전체			
2. 동	도시지역	시의 동		자치구의 동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명암표시된 부분이 농촌지역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한편,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주체로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 특별자치시의 행정시 포함, 이하 같음)·특별자치시’를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 결과 현재 ①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특별자치시(139개)와 ② 동만 포함하는 시(21개) 총 160개의 ‘시·군·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나,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60개의 지역 중 ①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특별자치시’ 139개 지역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③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17개)는 이 법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연계지원·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참고 3: 현행법상 대상지역 160개 시·군 현황】

구분	사·도	사·군	비고
①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 (139)	경기(1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농촌지역이 포함된 지역
	강원(15)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1)	기장군	
	대구(2)	달성군, 군위군	
	울산(1)	울주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② 동만 포함하는 시 (21)	경기(16)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이 포함된 지역
	강원(3)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전북(1)	전주시	
	전남(1)	목포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이에 개정안은 ①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특별자치시(139개)와
 ② 동만 포함하는 시(21개) 이외에 ③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
 구(17개)’도 이 법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 4: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 분	시·도	자치구	비고
③ 농촌을 포함하는 자치구 (17)	부산(3)	남구, 사하구, 서구	제3조제5호 나목에 따 른 농촌지 역이 포함 된 지역
	대구(3)	동구, 북구, 수성구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1)	북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참고 5: 자치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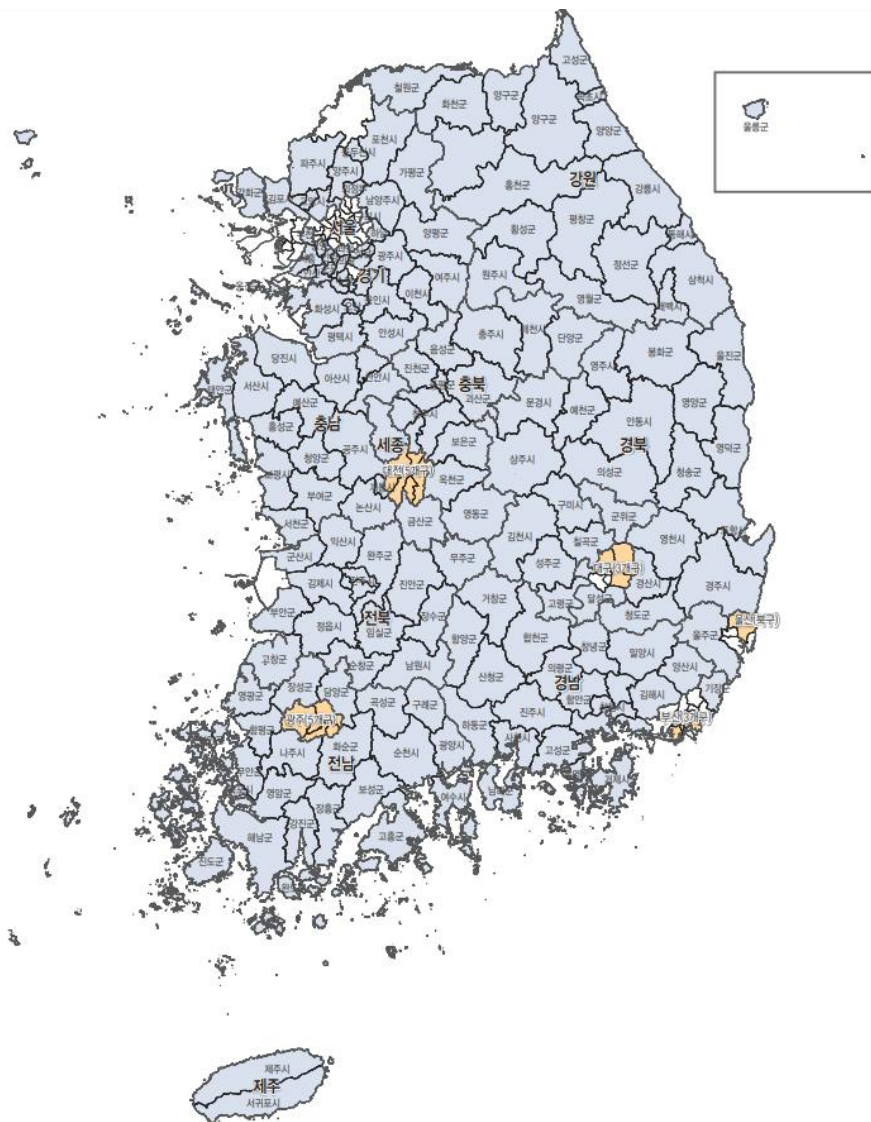
자치구(총 69개)	농촌을 포함하는 자치구(17개)	그 외 자치구(52개)
서울특별시(25개)	-	(25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15개)	(3개) 남구, 사하구, 서구	(12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7개)	(3개) 동구, 북구, 수성구	(4개)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인천광역시(8개)	-	(8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5개)	(5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대전광역시(5개)	(5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울산광역시(4개)	(1개) 북구	(3개) 중구, 남구, 동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개정안은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대상 지역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기초지자체는 현재 160개에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소재 17개 자치구가 추가된 177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참고 6: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지역】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개정안에 따를 때, 새로 추가되는 17개 자치구가 부여받게 되는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음.

【참고 7 : 이 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구분	내용	개정내용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① 시·군 →시·군·구 ② 시장·군수 →시장·군수 <u>구청장</u>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15조	주민제안	
제16조	농촌협약 체결	
제22조	주민협정 인가	
제23조	주민협의회 승인	
제28조	사업계획 승인	
제33조	기초정책심의회 설치	
제34조	지원조직 설치	
제35조	기초지원기관 지정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	보고 및 검사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일부 지자체의 재량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7조제1항은 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 시장)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참고4】**에 해당하는 자치구 17개 및 **【참고 3】**에 해당하는 동(洞)만 포함하는 시 21개, 총 3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

【참고 8: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안)
① 읍·면포함 시·군(139개)	○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의무) ○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재량)	<u><총 139개 지자체></u> ○ 좌 동
② 동포함 시(21개)	-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 - 농촌협약 참여 가능	<u><총 38개 지자체></u> ○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선택) ○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선택) -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 - 농촌협약 참여 가능
③ 농촌포함 자치구 (17개)	○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불가) ○ 농촌공간 시행계획 수립(불가) - 농촌특화지구 지정 불가 - 농촌협약 참여 불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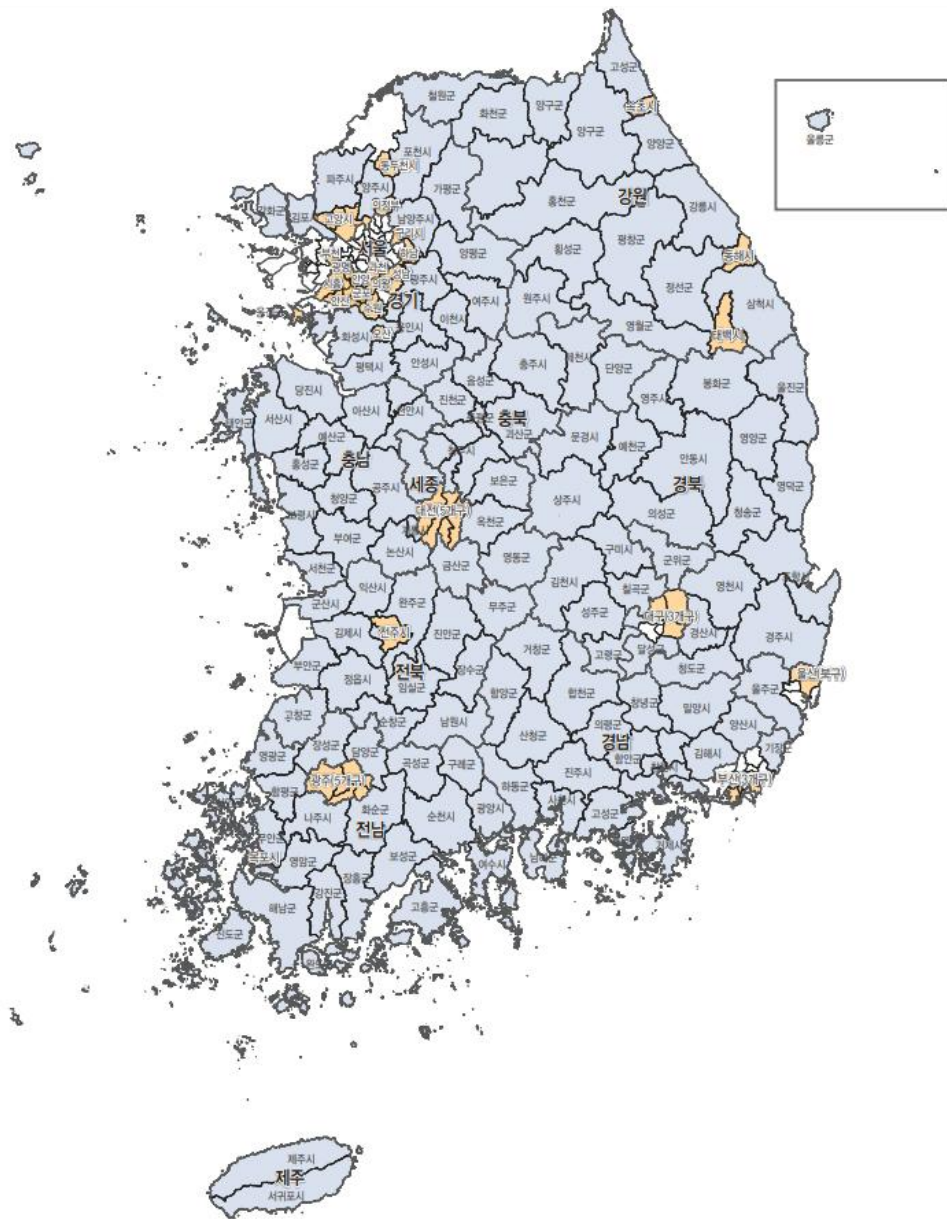
□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동 포함 읍·면 21개 + 농촌지역 포함 자치구 17개)의 경우는 그 면적의 일부분만이 농촌지역이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연계지원이나 특례적용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9: 선택적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38개)】

구 분	시·도	시·군·자치구
동만 포함하는 시 (21)	경기(16)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강원(3)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전북(1)	전주시
	전남(1)	목포시
농촌을 포함하는 자치구 (17)	부산(3)	남구, 사하구, 서구
	대구(3)	동구, 북구, 수성구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1)	북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참고 10: 선택적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지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한편, 개정안 제33조는 자치구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 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u>시·군</u> 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 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 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 을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 ----- ----- ----- ----- ----- ----- <u>시·</u> <u>군·구</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38개)와 그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광주, 대전)는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기초 정책심의회” 및 “광역정책심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실익이 없음.

- 따라서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기초 정책심의회” 및 “광역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타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

- 현행법에 따른 “시·군” 또는 “시장·군수”라는 용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농촌지역에 해당된다고 이해되나, “자치구”, “구” 또는 “구청장”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법률에서 개정안에 따른 “구” 또는 “구청장”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구” 또는 “구청장”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업무를 “구” 또는 “구청장”에게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서 일부 누락된 조문이 있고, 신규조문의 추가과정에서 인용조문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체계자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1 : 체 계·자 구 수정 필요 조문】

조문	내용	현행·개정안	수정필요
제9조제3항	기본계획의 공고 주체 변경	<u>시장·군수</u>	<u>시장·군수구청장</u>
제10조제4항	인용조문 변경	<u>제7조제4항에 따른</u> 기초조사	<u>제7조제5항에 따른</u> 기초조사
제11조제4항	인용조문 변경	<u>제3항과 같이</u> 공고	<u>제4항과 같이</u> 공고

2. ‘농촌위해시설’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2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농촌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정의함.
- 개정안은 ‘농촌위해시설’의 부정적 의미를 완화하기 위하여 ①
그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② 현재 농촌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포함하며, ③ 해당 시설이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략)	1. ~ 13. (생략)
14. “ <u>농촌위해시설</u> ”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 <u>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u> ----- ----- ----- <u>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u> <u>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u> <u>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u> <u>정비가 필요한 시설</u> ----- ----- -----.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위해시설’의 가치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언론보도 및 시행규칙(안) 의견조회 과정에서 ① ‘농촌위해시설’이라는 명칭이 대중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³⁾과

② ‘농촌위해시설’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며,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철거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로 인하여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4)제시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안)을 통하여 ‘농촌위해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의견조회과정('24.1.11~5.29)

4) “농촌재구조화법 알고 보니 ‘축산 나가라’”(축산경제신문('24.1.26.))

【참고 12 : 농촌위해시설 포함가능 대상시설의 종류】

연번	대상 시설	근거 법령	예 시	비 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섬유제품, 가죽, 종이, 석유정제품, 가스, 합성염료 등 제조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
2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광업시설, 식품·의류 제조시설, 도축시설 등	
3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하수·폐수 처리시설, 식품·의류 제조시설등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을 받은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원칙적으로 축사는 제외되나, 배출허용기준 등 초과 시에는 포함	
4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골프장 등	고시 규정(안) *고시안 행정예고 중 (11.19.~12.9.)
5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6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 공장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공작기계, 프레스, 분쇄기, 목재가공기계, 제분기, 도정시설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또한 개정안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이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참고 13 :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사례】

- (1) 농촌위해시설 이전 : A시(‘22~’26) : 인근 마을과 이격되어 있는 사유지에 축사 2개소를 이전하여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총사업비 237억원(이전지구 68억원))
- (2) 농촌위해시설 철거 : B군(‘24~’28) :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초등학교 및 주거공간에 수질, 악취 등의 피해를 끼치는 폐축사 24개소 등 철거(총사업비 125억원)
- (3) 농촌위해시설 집단화 : C군(‘22~’26) : 마을 내 개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축사(9개소)를 마을과 이격된 거리에 이전하여 이전지구를 조성하고, 지방비로 스마트 공동축사를 신축하여 축사 집단화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총사업비 120억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축산단체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농촌위해시설’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해당 시설이 이 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농촌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 외에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까지 농촌위해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고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14 :유사업법례】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또한 ‘농촌위해시설’이라는 문구는 제2조제14호 뿐 아니라, 제2조제7호, 제6조제3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7호에도 존재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서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 미제출시 협의완료 의제(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현행법은 광역시장,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 및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협의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추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 및 허가·승인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협의요청 후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여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략)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u> 및 <u>환경부장관</u> 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	② ----- ----- ----- ----- <u>관계 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시행계획 내에 제12조제1항제5호</u> ----- ----- <u>사항이 포함되어 있을</u>

현행	개정안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u>시장 또는 군수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u>협의를 요청</u>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④ ----- -----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 ----- -----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계획 승인시 산업부·환경부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다양한 행정기관 소관의 정책, 허가·승인 등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협의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

□ 현행법은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및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부분은 현행법 제정시 ‘시행계획’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반영되는 단계로,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자연,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정 당시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되었고,

② 「산업부장관과의 협의」 부분은 ‘재생에너지지구’지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상의 에너지 발전원 비중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 제정 당시 법사위 단계에서 추가되었음.

□ 그런데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농림축산식품부), ‘도로’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산림청) 등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전협의를 필요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그 협의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을 추가하여 시행계획 승인 단계에서 협의를 미리 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시행계획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이 협의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계 행정 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계획 승인 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등의 설치·이전 및 폐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 등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시행계획 내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하에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4조, 제28조, 제31조 및 제39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안 제11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칭하는 경우, 이후 조문의 의미가 변형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5 :현행법에 따른 방침·계획의 수립·승인·협의·심의】

구분	내용	수립주체	승인· 확정주체	의견수 립	협의대상	심의절차	개정안
제6조	기본 방침	농식품부 장관	-	지자체 장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중앙 정책심의회	
제7조	기본 계획	계획 수립권자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농식품부 장관	광역 정책심의회	
제10조	시행 계획	계획 수립권자 (특별자치 시장제외)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	광역 정책심의회	(협의대상) 관계 행정 기관으로 수정
제28조	사업 계획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지방의회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광역 또는 기초 정책심의회	

2)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 완료 의제

- ☐ 개정안은 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시행계획 수립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절차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지역개발지원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16 : 유사입법례】

「지역개발지원법」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경관농업지구’ 명칭 변경 및 지정요건 확대(안 제12조제1항 제6호)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형 중 하나로 동종·유사 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경지를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경관작물 뿐 아니라 농촌마을, 자연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관도 ‘농업·농촌경관지구’로 관리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u>	6. <u>농업·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및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와 같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구 지정요건 확대를 통해 농촌 고유 경관의 보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농촌특화지구 중 하나로 ‘경관농업지구’를 두고,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을 통한 경관 형성’과 이를 통한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목적으로 규정함.
- 현재 경관농업지구 지정 사례는 없으며, 고창 청보리밭, 하동 직전마을과 같은 지역의 지정이 예상됨.

【참고 17 : 경관농업지구 후보지 사례】

□ 고창 청보리밭

- 위 치: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예전리, 용수리
- 면 적: 482ha(선동리 925-1번지 외 1,540필지)
- 재배작물: 청보리(동계작물), 메밀, 해바라기(하계작물)
- 행 사: 청보리밭 축제(매년 4월~5월), 메밀꽃 축제(매년 9월)



□ 경남 하동 직전마을

- 위 치: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면 적: (동계작물) 29ha, (하계작물) 33ha
- 재배작물: 양귀비, 호밀(동계작물), 코스모스, 메밀(하계작물)
- 행 사: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매년 9월~10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그런데 농촌이 보존해야 할 경관을 작물 집단화로 한정하기보다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등으로 확대하여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 「국토계획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역시 경관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다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농업·농촌경관지구’ 명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지구와 유사하여 혼동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8 : 유사입법례】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주민협정 주체 변경, 작성내용·기재사항 명확화 및 주민협정 체결요건 등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2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주민협정 체결의 주체를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으로 하고, 주민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주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협정 체결요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주민협정 체결을 주체를 ‘주민’으로 변경하고, 제23조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이 선택사항임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주민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정 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 등을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u>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u> ,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u>관리</u> 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u>주민</u> ----- ----- ----- ----- --- <u>관리, 이</u> ----- -----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	② -----

현행	개정안
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u>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u> 6. ~ 8. (생략)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u>체결</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협정체결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u> 5의2. <u>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 대표자</u>----- ----- ----- 6. ~ 8. (현행과 같음) ③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④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⑤ ----- <u>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u> ----- -----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협정서 체결시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주민협정체결 주체를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에서 ‘주민’으로 변경

- 개정안은 현행법상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협정체결 주체를 ‘주민’으로 변경하고 있음.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으로 「국토계획법」과 연계한 건축물 설치 제한 등 사유재산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촌특화지구 지정 여부, 지정 이후의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전에 주민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후 뿐 아니라 지정 이전에도 주민체결협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을 “주민”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법문만으로는 그 개정 취지가 주민체결협정 시점에 대한 고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기보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이 아닌 농촌특화지구 인근지역의 주민까지도 주민협정체결의 주체

로 확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그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주민협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화

- 현행법은 주민협정을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농촌특화지구의 ①지정, ②개발, ③관리, ④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음.
- 주민협정은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함.
- 현재까지 주민협정 체결 사례는 없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등의 예를 따를 때 주민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임.

【참고 19 : 주민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예시)】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및 층수에 관한 사항
- 건축물·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참고 20 : 유사입법례】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에 개정안은 주민협정이 농촌특화지구의 ①지정, ②개발, ③관리, ④자치규약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수식하는 범위가 해석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경관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주민협정서 기재사항 명확화

- 현행법 제23조⁵⁾는 협정체결자는 자신들의 자율적 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22조제2항은 선택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주소를 주민협정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주민협정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주소·성명’에서 ‘협정체결자의 성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주민협정 체결요건 등의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같이 난개발 시설 등의 입지를 방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SOC를 집중 설치하거나,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과 같이 축사, 공

5) 제23조(주민협의회)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장, 태양광 시설 등 유사한 기능을 지닌 시설 등을 이전·집적화 함으로써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주민협정을 통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각 농촌특화지구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내 토지 이용 등 행위에 직·간접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주민협정이 체결되거나,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에 의해 주민협정이 체결되는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협정 절차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동의’ 등 주민협정의 체결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주민협정 체결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 등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협정의 체결요건은 주민협정의 체결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인 「건축법」 및 「경관법」에서도 각각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과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참고 21 : 유사입법례】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 ☐ 이를 고려할 때 주민협정의 경우도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 또는 합의율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준공검사·준공인가 등 사업의 사용승인 규정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현행	개정안
	<u>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u> <u>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 “준공검사”는 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잘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완성을 공식화하기 위한 준공인가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 현지검측 등의 실체적 행위임.

“준공인가”는 승인권자의 사업계획 승인과 상응하는 법적 행정처분 행위로써, 공사잔금의 지급, 사업으로 완성된 시설물의 등록 및 사용과 소유권 보존 등기, 타 관리청 소관대상 공공시설의 귀속·이관 등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임.

□ 개정안은 ①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의 이행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한 준공 관련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 처리된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준공인가 통지시점에 공공시설이 해당 관리청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시설관리의 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조문의 도입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안 제28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하였는 바,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및 준공승인의 주체도 이에 대응되도록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22 : 유사입법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업기반시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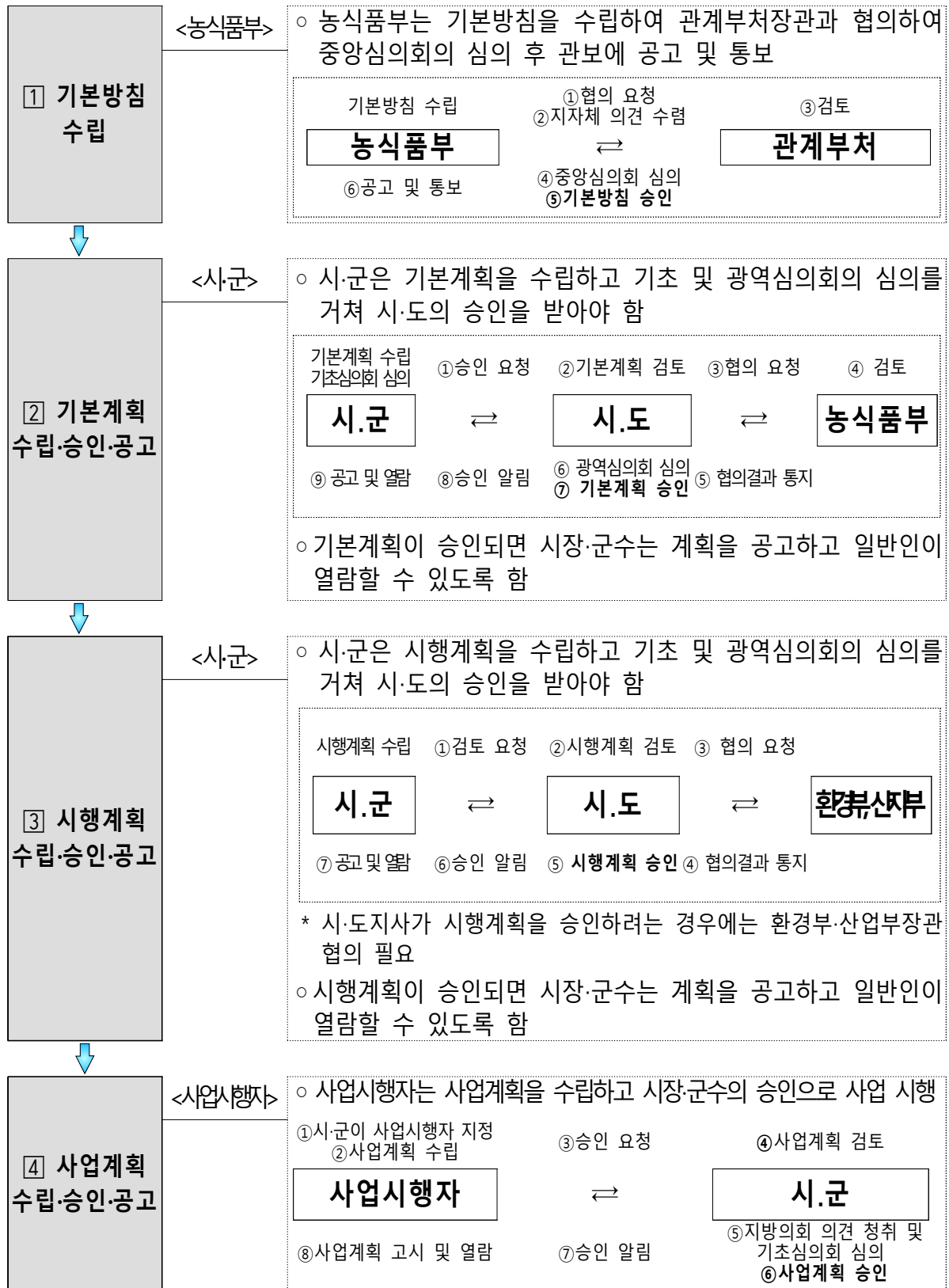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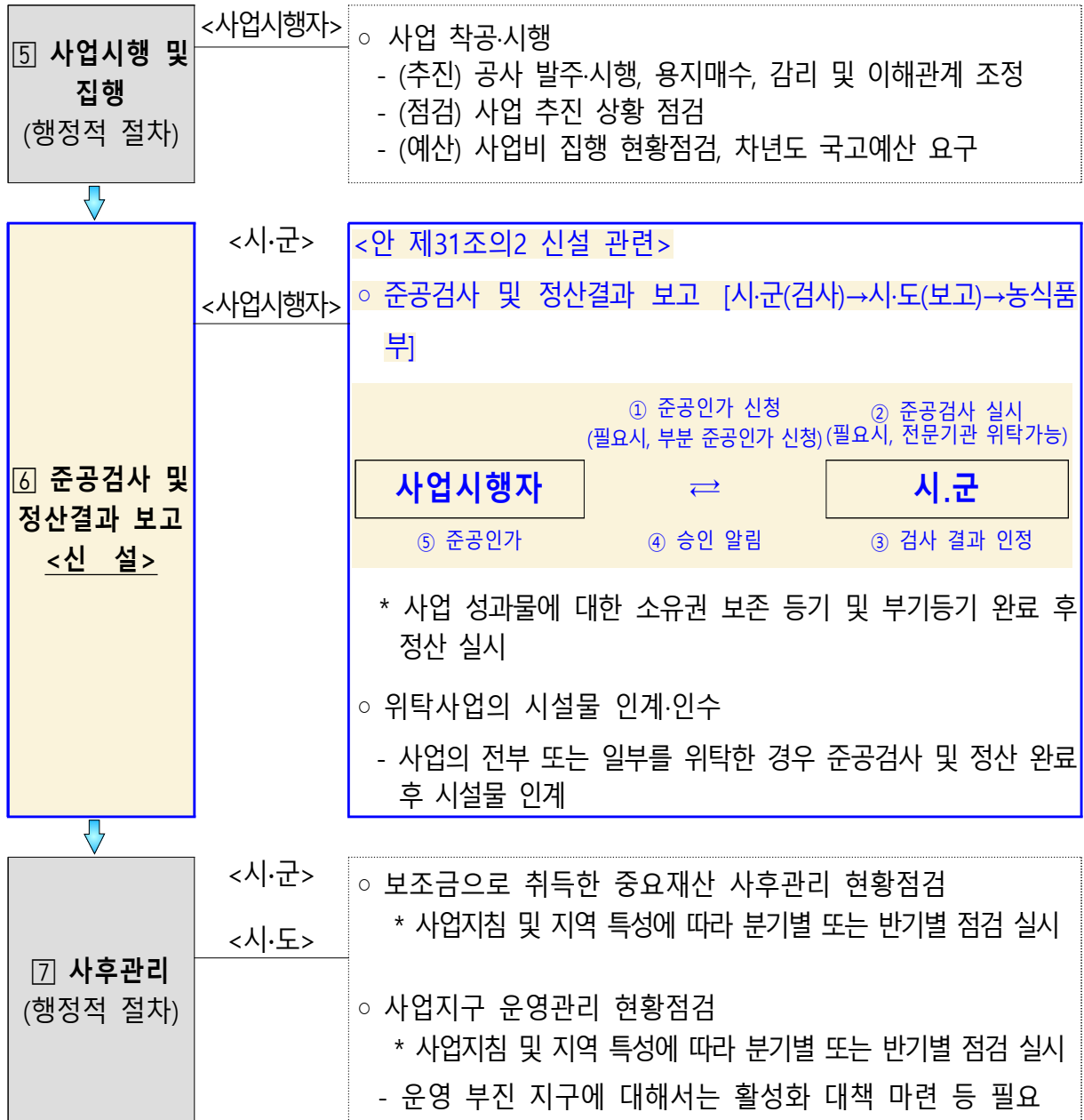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23 : 농촌공간계획 수립절차 개요 및 준공인가 규정 신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7. 중앙정책심의회 구성 등 위임규정 마련(안 제32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농촌공간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위임 근거를 두어 중앙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중앙정책심의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u>	
② (생략)	
<u><신설></u>	③ <u>중앙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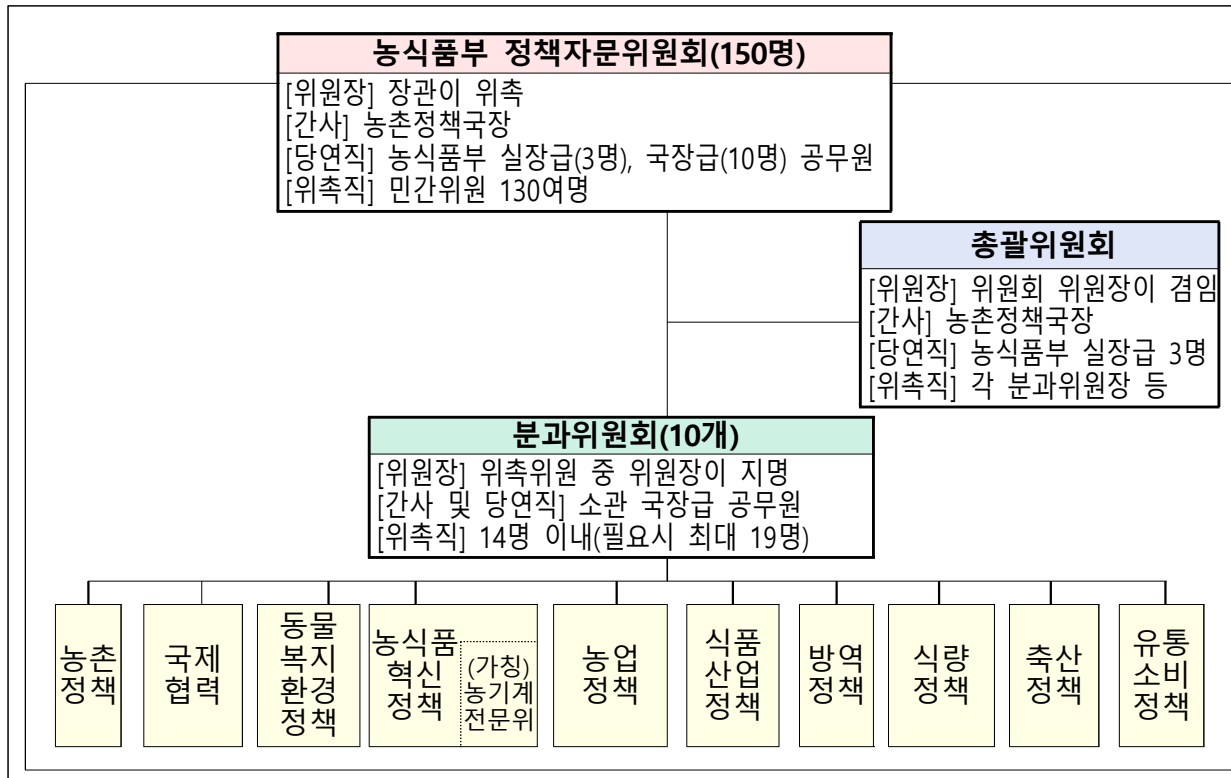
- 현행법 제32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동 법 시행령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정책심의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농촌정책분과’에서 수행함.

이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참고 24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구성)** 위원장(장관 위촉) 포함 150명 이내(임기 2년)
 - **(운영)**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로 운영
 - **(본위원회)** 농식품부 실·국장급 공무원(13명) 포함 150명 이내
 -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총괄위원회)** 농식품부 실장급 공무원(3명)과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다만, 농촌공간정책 심의 시 농촌 청년, 토지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별도로 중앙정책심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
여 입법미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33조6)에 따른 광역·기초정책심의회 규정에도
관련 위임규정이 존재함.

- 6)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개선(안 제35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률에서 중앙지원기관을 공공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방식을 변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 ----- ----- ----- 공공기관 등을 --- ----- ----- 한다)으로 -----.
1.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2.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운영·점검·평가 등의 지원 5. 통합지침 작성·운영 지원 6.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 ~ 9. (현행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기관 지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전문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심사를 통하여 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25 : 시행령에 따른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⑥ (생략)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원기관으로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총괄지원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특화지원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3개소), 광역지원기관으로는 8개 도에 각 1개소 씩 8개 기관이 지정된 상황임.

【참고 26 : 지원기관 지정 현황】

- 중앙지원기관 : 4개소*(‘24.5.13.~’26.12.31.)
 - * (총괄)한국농어촌공사
 - * (특화)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 광역지원기관 : 8개소*(8개도 당 1개소씩 8개소 지정 완료)
 - * (경기)(재)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강원)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충북)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남)(재)충남경제진흥원, (전북)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남)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경북)영남대학교, (경남)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기초지원기관 : 미파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2024.12. 6. 제출)

□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래 이후 새로 신청을 받아 지원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원기관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은 유사입법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지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이 24. 3. 29 시행되어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변경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현행처럼 경쟁에 의한 공정한 사무위탁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지원기관은 지원기관 공모('24.4.3.~17.) 및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사('24.4.24.~5.8.)을 거쳐 지정된 것으로 동 조문에 근거한 기관 지정 및 지정기간('24.5.13.~'26.12.31.) 등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 27 : 유사입법례】

「도시재생법」

제1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9. (생략)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 가. 국토연구원
 - 나. 한국교통연구원
 - 다. 건축공간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간척지법」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9. 부 칙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령등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문은 즉시 시행하되,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이 포함된 조문은 그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 제35조제1항과 현행규정이 배치될 소지가 있어 이미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 27 : 부칙 정리】

구 분	조 문
공포한 날	○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가능지역 확대 관련 조문(안 제2조, 11조, 제13조, 제15 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 일부 지자체의 재량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행계획 승인시 협의 기관 확대(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공포 후 6개월	○ 농촌위해시설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2조제14호) ○ 경관농업지구 명칭 변경 및 지정요건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 ○ 주민협정 주체 변경, 작성 내용 명확화 등 (안 제22조) ○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 마련(안 제31조의 2) ○ 중앙정책심의회 구성 등 위임규정 마련(안 제32조제3항)
경과조치 (개정안수용시)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개선(안 제35조제1항)

문 의 처

02)6788-5417